

목 차

■ 지평 소식 ■

- 지평, R&D 전문팀 구성1
- 지평, 공익 사단법인 '두루' 설립3
- 유정훈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미얀마 현지법인 복귀4
- 김이태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5
- 이은영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5
- 배지영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6
- 이경호 변호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파견근무 마치고 복귀7
- 고세훈 변호사, 미얀마 현지법인 근무 마치고 본사 복귀8
- 이준엽 공인회계사 영입 및 미얀마 현지법인 파견9
- 이공형 전문위원 영입10

■ 주요 업무 사례 ■

- 지평, FNC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IPO) 관련 자문11
- 지평, 국민연금과 한국전력의 코퍼릿파트너십 PEF(소위 '코파펀드')를 대리하여 도이치뱅크가 보유한 격맹국제유한공사의 지분 인수 관련 자문12
- 지평 캄보디아팀,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하여 토마토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부동산보유 법인 지분 매각14

■ 법률 논단 ■

- [도산] PF사업 관련 신용보강 약정의 도산법상 부인 대상성15

■ 최신 판례 ■

- [건설부동산]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의 분양계약 내용 판단 기준.....19
- [도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지.....23

■ 최신 법령 ■

- [노동] 기간제법 등 개정.....27
-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31
- [상법] 상법 일부 개정안.....33
-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35
- [보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38

■ 단신 ■

- 김지형 고문변호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41
- 임성택 변호사,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42
- 심희정, 이행규 변호사,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 초청으로 강의.....43
- 심희정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2014 IAKL(세계한인변호사회) 뉴욕총회' 참석.....44
- 강율리, 김성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2014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강의.....45
- 김성수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 대표로 선출 外.....46
- 임방조 변호사, '최고집 사장의 가업승계 분투기' 출간.....48
- 민창욱 변호사, 한국경제가 개최하는 '로스쿨 인재상 및 로스쿨 경쟁력 제고 방안 좌담회' 토론자로 참석.....49
-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천문우주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워크숍' 발표 外.....50

■ 지평 소식 ■

지평, R&D 전문팀 구성

법무법인 지평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최초로 R&D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R&D 투자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R&D 기획, 투자, 수행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상호 권리관계의 조정, 연구성과물에 관한 라이선싱 및 사업화, 연구개발 자료 등 영업비밀의 보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 기술료 납부 등 각종 의무의 이행 등 많은 영역에서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았더라면 손실·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제도와 사업구조가 복잡하여 일반 공공계약법이나 민사법적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R&D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제도 자문, 소송 수행 및 입법 지원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R&D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소재부품·바이오·에너지 등 관련 산업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한 변호사들이 결합한 R&D팀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이 바라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D 업무와 관련된 일반 소송,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변호사

- Tel : 02-6200-1721
- FAX : 02-6200-0811
- E-mail : sylee@jipyong.com

■ 지평 소식 ■

지평, 공익 사단법인 '두루' 설립

법무법인 지평은 9월 4일 공익 사단법인 '두루' 창립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8월 25일 법무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9월 1일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세상을 두루 살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사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이, 이사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영화 교수, 아쇼카한국 이해영 대표와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박용대, 강울리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창립을 기념하여 2014년 하반기 사업으로 'NGO 재정·법률지원사업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 홈페이지(<http://duroo.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설립...이사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2014. 9. 11.)
- 법률신문 - 지평, '두루' 창립 기념식(2014. 9. 15.)
- 서울경제 - 지평, 공익 사단법인 '두루' 설립 外(2014. 9. 15.)
- 법률신문 - '두루', NGO지원사업 공모(2014. 11. 13.)

■ 지평 소식 ■

유정훈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미얀마 현지법인 복귀



(법무법인 지평 유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유정훈 변호사가 지난 10월 일본의 10대 로펌 중에 하나인 키타하마 로펌에서 연수를 마치고 미얀마 현지법인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국내 유력 로펌에 근무하면서 송무 및 기업자문에 대한 경험을 쌓았으며, 2009년도 법무법인 지평 라오스 지사장, 캄보디아 지사장으로 해외파견근무를 시작한 이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법률, 관행 및 법률업무에 대한 경험을 현지에서 쌓은 거의 유일한 한국변호사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5년여간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건설분야 및 금융분야의 대기업 등을 자문하고,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정부가 제정한 부동산규제법안의 폐지 및 제정에 대한 협상을 수행하였으며, 2012년 초 최초의 캄보디아 기업 상장업무인 캄보디아 국영기업인 프놈펜수도청(Phnom Penh Water Supply Authority)의 캄보디아증권거래소 상장업무를 현지 주 담당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등 독보적인 해외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활동 영역과 역량을 넓혀 법무법인 지평의 미얀마 현지법인의 법인장을 겸임하며 시장개방으로 한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미얀마에서 고객들에게 동남아시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일본의 키타하마(Kitahama Partners)에서 연수를 하며 일본 변호사들과 캄보디아,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업무와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국의 기업고객뿐 아니라 일본의 기업고객에 까지도 그 업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김이태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김이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김이태 변호사가 지난 9월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김이태 변호사는 금융파트 소속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에 대하여 국제금융, 증권, ABS, ABCP, ABL, Project Finance 등 금융 및 증권 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부동산 개발 사업, SOC 사업 등 건설 부동산 관련 자문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지평 중국팀 소속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사업 등 중국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업무영역의 확장 및 전문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은영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이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이은영 변호사가 지난 9월 미국 Columbia University LL.M.(법학석사)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은영 변호사는 금융파트 소속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증권, 국제금융, 해외투자, ABS, Project Finance 등 금융 및 증권 업무에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지영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배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배지영 변호사가 지난 9월 영국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LL.M.(법학석사, Islamic Law 전공)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 하였습니다.

배지영 변호사는 회사파트 소속으로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국제거래, 도산·구조조정, 해외업무, 자원·에너지·환경, 해외건설 등과 관련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지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이슬람법학회 초대학회장, 한국이슬람법학회 초대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이경호 변호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파견근무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이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이경호 변호사가 지난 9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파견근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경호 변호사는 회사파트 소속으로 기업자문, M&A 및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적기업 리걸클리닉 겸임교수,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M&A, 공정거래 및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지원 업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고세훈 변호사, 미얀마 현지법인 근무 마치고 본사 복귀



(법무법인 지평 **고세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고세훈 변호사가 11월 미얀마 현지법인 근무를 마치고 본사로 복귀하였습니다.

고세훈 변호사는 회사파트 소속으로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국제거래, 해외업무 등과 관련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이준엽 공인회계사 영입 및 미얀마 현지법인 파견



(법무법인 지평 이준엽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0월 이준엽 공인회계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준엽 공인회계사는 미얀마 현지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준엽 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 대명회계법인에서 상장기업 및 글로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회계 및 세무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법인에서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의 회계 및 세무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이공형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지평 이공형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9월 이공형 일본 담당 전문위원을 영입하였습니다.

이공형 전문위원은 현재 일본 및 국제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FNC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IPO)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FNC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IPO)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문화일보 - 'FNC엔터' 코스닥 상장 추진... 기획사 지각변동(2014. 9. 3.)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민경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국민연금과 한국전력의 코퍼릿파트너쉽 PEF(소위 '코파펀드')를 대리하여 도이치뱅크가 보유한 격맹국제유한공사의 지분 인수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올해 초 법무법인 지평의 자문으로 1년 6개월 만에 결성된 국민연금과 한국전력의 코퍼릿파트너쉽 PEF(소위 '코파펀드')를 대리하여 도이치뱅크가 보유한 격맹국제유한공사의 지분 인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코파펀드가 대기업의 부채비율 감축 및 선제적 구조조정에 활용된 유의미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더블 - 국민연금, 대기업 에너지 프로젝트 '도우미'(2014. 7. 24.)

[담당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이민희 변호사



최승호 미국변호사



최정묵 미국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캄보디아팀,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하여 토마토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부동산보유 법인 지분 매각

법무법인 지평 캄보디아팀은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하여 토마토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부동산보유 법인 지분 매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딜에서 지평 캄보디아팀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매수자를 물색하여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매각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서울경제 - 토마토저축은행 캄보디아 법인 매각 성공(2014. 11. 5.)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이민경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 법률 논단 ■

[도산] PF사업 관련 신용보강 약정의 도산법상 부인 대상성



(법무법인 지평 배성진 변호사)

1. 들어가며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회사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절차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회사의 계약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그 중 하나가 도산절차에 들어간 건설회사가 PF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신용보강 약정에 대해 도산법상 부인권 행사가 가능한지의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신용보강 약정은 PF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거래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은 자산유동화 등의 수단을 통해 증권화되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보강 약정에 대한 부인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해당 PF사업 참여기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PF사업 시공사 관리인의 무상부인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30.자 2014회확791 결정 등, 이하 '대상 결정'). 이 글에서는 대상 결정의 요지와 그 의미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신용보강 약정의 부인 대상성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대상 결정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A사는 국·내외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행사 선정, 사업자금 조달 주관 등 PF사업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위 PF사업의 사업자금은 대주(貸主)인 SPC가 기업어음 등을 발행하고 해당 증권을 유동화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조달되었으며, A사는 차주(借主)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채무를 인수하거나(채무인수 약정) 상환부족 자금 보충을 약정하는 방법(자금보충 약정)으로 차주의 신용을 보강해 주었습니다.

A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대주가 위 신용보강 약정에 따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자, A사의 관리인은 위 약정 체결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인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주는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사 관리인의 무상부인권 행사를 배척하였습니다.

(1) 무상행위성 부정

A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실시할 시행사를 발굴하고 자금조달을 주선하는 금융기관에 사업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신용을 보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공사를 진행해 온 점, A사의 신용보강 약정이 대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A사는 신용보강을 통한 대출금으로 특별한 자금 여력이 없는 시행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수익을 창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사는 이 사건 신용보강 약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당성 인정

가사 이 사건 신용보강 약정이 무상행위라 하더라도, (i) A사는 위와 같은 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여 왔고 이 사건 신용보강 약정도 그와 같은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던 점, (ii) 이 사건 신용보강 약정 체결 당시 A사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고 A사의 영업상황이나 재무상태에 비추어 가까운 시일 내에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iii)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이와 같은 PF사업으로 인한 우발채무의 현실화 예상액이 총 PF사업의 신용공여액 대비 약 3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시행사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A사는 공사수익을 창출하고 대주도 시행사로부터 장래 정상적인 채무의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신용보강 약정 체결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과 필요성을 갖춘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대상 결정의 의미

대법원 판례는 무상부인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상행위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행위의 대가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회생회사가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회생회사의 보증행위와 이로써 이익을 얻은 채권자의 출연 사이에는 ‘사실상의 관계’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보증행위를 원칙적으로 무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의 유사성 인정요건인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도 매우 좁게 해석하여, 100%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모회사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이러한 판례 하에서는 ‘보증행위’가 무상부인권 행사를 면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PF사업 관련 신용보강 약정을 위와 같은 ‘보증행위’의 한 유형으로 평가하여 무상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PF사업 관련 신용보강 약정은 “어떠한 경

제주체가 제3자의 채무에 관하여 대가 없이 같은 내용의 채무부담을 약속한다"는 전형적인 보증과는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 신용보강을 약정하는 주체는 해당 PF사업의 성공에 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키(key)를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사업 주체(통상 시행자)를 차주로 삼아 사업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실질적 자력이 있거나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가 신용보강을 약속하는 것은, 그 PF사업의 개시 및 진행을 위한 핵심적인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신용보강의 주체는 그와 같은 약정을 통해 PF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다른 사업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며, 비로소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보강 약정의 무상행위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대가'는 단순히 자금보충 또는 채무인수라는 전체 약정의 일부분만을 잘라내어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 전체, 사업 관련 약정 일체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결정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A사가 신용보강 약정의 대가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PF사업의 경제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설사 무상행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F사업과 이를 위한 신용보강 약정이 관련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상적 거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상 결정은 이러한 점에서도 의미 있는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A사가 시행사 선정, PF사업 자금조달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였다는 점, PF 자금의 상당 부분이 공사비 형태로 A사에 직접 귀속되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결정의 결론이 위와 같은 특수성이 현저하지 않은 PF사업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PF사업 진행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강 약정을 무상행위로 보거나 그 상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신 판례 ■

[건설부동산]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의 분양계약 내용 판단 기준

정원 변호사 | 마상미 변호사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분양계획에 따른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되어 있는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1. 사실관계

S사는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2004년 12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일부는 사용승인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일부는 사용승인 일 이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중 A동 퍼팅공원, B동 옥상휴게공원, B동 복도 휴게공간이 S사가 분양을 위해 제작한 분양카달로그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분양계획에 따른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되어 있는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판시사항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준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준공 후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완공된 아파트 등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준공 전에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분양광고를 하거나 견본주택 등을 설치한 적이 있고, 그러한 광고내용과 달리 아파트 등이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되어 있는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아파트 등의 현황과는 별도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등의 단지 중 일부는 준공 전에, 일부는 준공 후에 분양된 경우에는 각 수분양자마다 분양계약 체결의 시기 및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구체적 거래조건이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분양회사와 각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해설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분양계약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그러나 ①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분양카달로그 등 분양광고의 내용을 신뢰할 수 밖에 없지만, ② 전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 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준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준공 후에 분양이 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 ② 전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에는 비록 준공 전에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분양광고를 하거나 견본주택 등을 설치한 적이 있고, 그러한 광고내용과 달리 아파트 등이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되어 있는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아파트 등의 현황과는 별도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등의 단지 중 일부는 준공 전에, 일부는 준공 후에 분양된 경우에는 각 수분양자마다 분양계약 체결의 시기 및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구체적 거래조건이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분양회사와 각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까지도 분양카달로그와 달리 시공된 부분을 모두 하자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분양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지만, ① 선분양, 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와 ② 전시공, 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분양, 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준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준공 후에 분양이 되는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손해배상(기)등]

■ 최신 판례 ■

[도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지

배성진 변호사 | 배기완 변호사

1. 사실관계

甲회사는 골프장, 콘도 등으로 구성된 A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1998년경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 乙회사는 甲회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다른 채권에 관해서는 정리채권 신고를 했으나 A리조트 회원권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음.

甲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에는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의 명도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을 변제하되, 변제방법 등은 당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정리법원은 A리조트 회원들인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의 채권자 숫자가 10,000명 이상으로서 법정의 액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구 회사정리법 제23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인가했고, 인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됨.

甲회사의 관리인은 회원보증금 1,000원을 미납한 乙회사의 A리조트 회원권(회사정리절차개시 후 1,000원을 지급함)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변경정리계획이나 각종 안내문 등

에 위 회원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함.

甲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乙회사는 甲회사에 A리조트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甲회사는 위 회원권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

2. 쟁점

-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 관리인이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했다고 해서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있는지
-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지

3. 판시사항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납된 회원보증금 1,000원은 위 각 회원권의 보증금 3,200,000원 내지 125,000,000원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원보증금 지급의무와 회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게 할 원고의 의무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보

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공익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에 해당되는 채권이거나 구 회사정리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이어서, 관리인이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해설

이 사건은 구 회사정리법이 적용되었으나,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쟁점에 관해 판단했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미이행 쌍무계약은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둘째, 대법원은 공익채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청구권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했다고 해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셋째, 대법원은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회생계획을 인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①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 ② 공익채권의 인정 요건, ③ 회생계획안에 규정된 권리의 미신고 권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204157 판결

■ 최신 법령 ■

[노동] 기간제법 등 개정

이광선 변호사 | 임이지 변호사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4년 11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법률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최근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법률 제12469호, 2014. 3. 18. 공포, 9. 19. 시행)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기간근로자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의3 제1항). 또한, 만일 사업주가 이러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5조의3 제2항). 한편, 위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24조 제1항).

개정 「기간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14호, 2014. 9. 18. 공포, 9. 19. 시행)에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i)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배상명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ii) 그 밖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 1,000만 원 및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6조, 별표3).

2.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최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2528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은 개정 전에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체당금의 지급사유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한편 개정 전 법률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체당금과 관련한 부담금의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데 반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해당 사업주도 부담금의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제10조 제1호 삭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가.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 신설).

개정 전에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된 장부·서류의 작성이 미비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속히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30호, 2014. 9. 24. 공포, 9. 25. 시행)에서는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추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부담금의 체납처분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4조 제2항 제5호 타목·파목 및 하목 신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는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결손처분 및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확대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45호, 2014. 9. 30. 공포, 10. 1.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제29조 제1항 제1호).

현재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등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기간이나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다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아니하여,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육아기의 자녀가 있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생후 15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나.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액 일부가 증액되었습니다(제95조의2 신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이 증액되었습니다(제104조의2 제2항).

현재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 **다운로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최신 법령 ■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성진 변호사 | 배기완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0월 15일 법률 제12783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가.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제231조의2 제1항 신설).

나.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함(제243조의2 제1항 신설).

다.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게 함(제231조의2 제2항 신설).

라.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게 함(제243조의2 제2항 신설).

마. 개정법 중 필요적 배제사유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제644조의2 신설).

2. 다운로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최신 법령 ■

[상법] 상법 일부 개정안

정철 변호사 | 강재영 변호사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수합병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지난 2014년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각분할합병 및 삼각주식교환제도 도입

2011년 개정상법 시행으로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삼각합병 제도에 의해 모회사는 인수대상회사의 의무나 책임이 모회사로 승계되는 것을 차단하고, 주주총회 승인이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대상회사를 자회사에 흡수합병 시킴으로써 인수대상회사를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제523조의2).

다만, 2011년 개정상법 하에서도 역삼각합병(인수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금번 상법 개정안은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역삼각합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360조의3). 역삼각합병의 경우 인수대상회사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금번 상법 개정안대로라면 인수대상회사가 가진 특정 권리(영업권, 계약상 권리 등)를 유지하는 구조의 합병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번 상법 개정안은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삼각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530조의6).

2. 간이영업양수도 절차 도입

상법은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360조의9, 제627조의2). 금번 상법 개정안은 영업을 양수하려는 회사가 상대방 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상대방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정안 374조의3).

3. 합병·분할 관련 규정 정비

현행 상법은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금번 상법 개정안은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때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360조의5, 제374조의2 등). 또한, 금번 상법 개정안은 분할 합병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등), 분할기일, 분할 시 자기주식의 교부 허용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530조의5 등).

4. 추후 업데이트 예정

금번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 내용이 확정될 것인데,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5. 다운로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채희석 변호사

정부는 지난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등 그간 여러 차례 과도한 금융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발행·공시규정')이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및 개정 발행·공시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감독기준 완화**가.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 조정**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이 면제됩니다. 다만 외환포지션 한도규제는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신탁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국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외환건전성 규제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나.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회계자료 제출 부담 완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감사 또는 검토의견 제출이 허용됩니다.

다.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 자회사의 전산설비 해외 위탁 허용

그간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지점은 장외파생상품 업무 관련 전산설비 등의 해외 위탁이 가능하나, 국내 자회사의 경우 규정 미비로 해외 위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자회사 역시 해외 위탁이 허용되었습니다.

2.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국은행을 추가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이 국채, 통안채, 재정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3.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재기산 예외사유 확대

현행 규정은 채권발행시 증권신고서상 발행 예정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이 다를 경우 효력발생기간을 재기산(3영업일)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채권발행 금액이 증권신고서상 발행 예정금액의 $\pm 20\%$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기간이 재기산되지 않도록 하여 채권 발행절차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4.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자기매매 한도 설정

금융투자업자가 과도한 파생상품 자기매매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파생상품 자기매매에 따른 최대 손실한도를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5. 외국인 투자자 등록신청시 내국인의 가장 등록 거부·취소근거 마련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검은머리 외국인)하여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 다운로드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최신 법령 ■

[보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배성진 변호사 | 허종 변호사

2014년 7월에 발표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의 일환으로 2014년 9월 25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의무(안 제 95 조의 2 제 1 항)

- ① 휴대폰 보험, 채무면제·유예서비스와 같이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② 다만, 설명의무 이행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안내 강화(안 제 110 조의 2)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안 제 141 조 제 1 항, 제 2 항)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보험계약 이전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계약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라.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안 제 164 조의 2, 제 164 조의 4)

-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 지연과 같은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안 제 88 조 제 3 항, 제 134 조 제 3 항)

- ①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불완전판매, 기초서류 위반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바. 기타

그 밖에,

- ①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안(안 제95조의4 제7항),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안(안 제128조의4),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을 외부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안(안 제120조 제2항), 치매 등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대리청구를 지원하는

안(안 제164조의3), 방카상품의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을 명확화하는 안(안 제71조 제6항), 경영·부수업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안 제11조, 제11조의2),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 추가시 허가요건을 명확화하는 안(안 제6조 제4항), 공인계리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안 제181조) 등 제도개선 법률안,

- ②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을 제한하는 안(안 제87조 제2항), 보험회사 등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안(안 제88조 제3항, 제134조 제3항),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회사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안(안 제134조 제1항),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시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안(안 제136조 제2항), 금전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안(안 제84조 제2항), 과징금·과태료 부과 상한을 인상하는 등 과징금·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안(안 제196조, 제209조, 제210조), 손해사정사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안(안 제189조),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안(안 제209조)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안,
- ③ 대주주 등과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거래에 '자산거래' 외에 '용역거래'를 추가하는 안(안 제111조 제1항, 제5항), 대주주와의 거래시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안(안 제111조 제2항 내지 제5항), 대주주 거래에 대한 수시공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안 제200조), 대주주와의 부당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안(안 제196조 제1항, 200조 등) 등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법률안 등

포괄적인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신 ■

김지형 고문변호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가 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입니다.

■ 단신 ■

임성택 변호사,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기구로서 지역·지구 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임기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입니다.

■ 단신 ■

심희정, 이행규 변호사,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 초청으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 초청으로 이행규 변호사가 11월 6일 '사내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자본시장법'을 주제로, 심희정 변호사가 11월 13일 '사내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금융지주회사법'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심희정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2014 IAKL(세계한인변호사회) 뉴욕총회' 참석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A Growing Global Tapestry – Weaving an International Legal Network'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4 IAKL(세계한인변호사회) 뉴욕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이훈 미국변호사는 기업법(Corporate Law) 관련 세션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단신 ■

강울리, 김성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2014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강의



(법무법인 지평 강울리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린 '2014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에서 강울리 변호사가 8월 29일 '금융자문'을 주제로, 김성수 변호사가 9월 2일 '전자소송'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김성수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 대표로 선출 外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임기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입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은 2008년 의료 분쟁 등 의료법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창립한 대표적인 전문변호사 단체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18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의료전담 재판부와 간담회, 의료 판례 분석 보고와 논문 발표, 일본 등 외국 의료 변호사 단체와 교류회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9월 11일 YTN 방송 '뉴스의 정석'에 출연하여 '담뱃값 인상 방안'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현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방송]

- YTN - 담뱃값 인상, 흡연을 얼마나 떨어질까?[김성수, 한국금연운동협회 이사](2014. 9. 11.)

김성수 변호사의 담배규제 관련 칼럼이 한국법제연구원 정기간행물 법연 44호(2014년 가을호)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내부고발자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법연 44호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내부고발자 및 공공기관의 역할\(2014년 가을호\)](#)

김성수 변호사가 45기 사법연수생 의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변호사의 활동 현황'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임방조 변호사, '최고집 사장의 가업승계 분투기' 출간



(법무법인 지평 임방조 변호사)

부산 사무소 임방조 변호사가 가업승계, 증여 및 상속, CEO플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업승계 문제를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최고집 사장의 가업승계 분투기'를 출간하였습니다.

■ 단신 ■

민창욱 변호사, 한국경제가 개최하는 '로스쿨 인재상 및 로스쿨 경쟁력 제고 방안 좌담회'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

민창욱 변호사가 한국경제에서 개최한 '로스쿨 인재상 및 로스쿨 경쟁력 제고 방안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로스쿨의 경쟁력, 기업 및 로펌이 원하는 인재상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단신 ■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천문우주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워크숍' 발표 外



(법무법인 지평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가 8월 22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천문우주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워크숍'에서 '러시아 천문우주과학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가 10월 27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열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한러 물류협력 포럼'에서 '극동 투자환경 고찰 및 투자 진출시 법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극동 러시아 중심의 물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극동 비즈니스 환경 현황과 발전 전망, 물류·인프라 전망 프로젝트, 신규사업 진출 전략 등의 세부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가 11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 코트라, 러시아연방변호사회, 러시아 로펌 YUST, ALRUD가 공동주최한 "Business perspectives in Russia" 세미나에서 2부 세션의 패널토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